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51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조문 신설

- 1)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안 제10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안 제21조 제4항)
- 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의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

- 1)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1회로 정함
- 2) 수익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 5년
-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 조건

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조문

신설(안 제27조의3)

라. 과태료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안 제35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10. 10. ~ 10. 30.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등)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등)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u>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6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7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u>

<신 설>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 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신 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
른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
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
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

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정지혜 (☎ 3153-8582)